



技術者 資格法 制定 公布

기술자 資格 및 대우를 制度一元化

- ◎… 지금까지의 散發的인 技術者資格制度를 一元化하여 技術者の 우대조처등을 制度的으로 …◎
- ◎… 마련키 위한 國家技術資格法이 12月 31日 公布施行됐다. 이 國家技術資格法은 一定한 …◎
- ◎… 資格을 갖인 技術者는 취업을 政府와 지방自治團體가 보장하며 資格취득자의 技術분야 …◎
- ◎… 에 대한 영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 公共團體, 정부投資機關 …◎
- ◎… 등, 機械, 金屬, 化工電子, 造船, 航空, 土木, 建築, 섬유, 鑛業등, 産業發展과 관련있 …◎
- ◎… 는 모든 기업체는 일정비율 이상의 職원을 技術資格취득자로 매우도록 定하여 技術者 …◎
- ◎… 취업의 길을 넓히고 보다 효율적인 科學技術을 發展시켜 가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
- ◎… 이번엔 制定된 國家技術資格法은 다음과 같다. <편집부> …◎

國家技術資格法全文

第1條 (目的) 이 법은 技術資格에 關한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여 適正한 資格制度를 確立하고 그 管理와 運營을 効率化함으로써 技術人力의 資質 및 社會의 地位의 向上과 經濟開發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技術資格의 定義) 이 법에서 技術資格이라 함은 機械·金屬·化工·電氣·電子·通信·造船·航工·土木·建築·纖維·鑛業 및 其他産業發展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技術分野의 資格을 말한다

第3條 (技術資格의 區分과 基準) ① 技術資格은 技術系와 技能系로 分類한다.

② 技術資格의 等級·基準 및 種目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條 (技術資格의 取得) 이 법에 의한 技術資格取得者(以下 “技術資格取得者”라 한다)는 主務部長官이 이 법에 의하여 施行하는 技術資格檢定에 合格한 者라야 한다.

第5條 (技術資格檢定の 受檢義務) ① 教育法에 의한 各級 實業系 및 技術系 學校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學校에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分野에 屬하는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하는 者는 文敎部長官이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主務部長官

으로서 施行하는 技術資格檢定을 받아야 한다.

② 職業訓練法에 의한 職業訓練을 行하는 機關에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分野에 屬하는 職業訓練의 課程을 履修하는 者는 主務部長官이 施行하는 技術資格檢正을 받아야 한다

第6條 (技術資格檢定の 基準等) ① 이 법에 의한 技術資格檢定の 基準·方法 및 節次는 大統令으로 定한다.

② 主務部長官이 技術資格檢定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7條 (技術資格檢定科目의 免除) ① 外國에서 資格을 取得한 者가 이 법에 의한 技術資格檢定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當該 技術分野의 檢定科目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② 다른 法令에 의하여 資格을 取得한 者가 이 법에 의한 技術資格檢定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當該 技術分野의 檢定科目의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③ 技術資格取得者가 이 법에 의한 같은 等級의 다른 技術資格檢定을 받고자 할 때에는 當該 檢定の 科目중 重複되는 科目은 이를 免除한다.

第8條 (登錄) ① 技術取得者는 當該 檢定을 施行한 主務部處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는 때에는 그 登錄事項을 科學技術處長官에 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技能系에 屬하는

登錄事項은 勞動廳長에게도 通報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9條 (技術資格手帖) ① 主務部長官은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에게는 技術資格手帖을 交付한다.

② 技術資格手帖을 紛失 또는 毀損한 者에게는 그 申請에 의하여 이를 再交付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手帖의 交付·再交付 및 그 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技術資格手帖은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 (技術資格取得者에 對한 優待) ①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技術資格取得者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適正한 維持와 그 就業 및 身分 保障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分野에 關한 營業중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을 許可 또는 認可하거나 權利의 設定 其他 利益을 賦與하는 때에는 當該 技術分野의 技術資格取得者에게 優先權을 賦與하여야 한다.

③ 技術資格取得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資格과 同種 同等한 다른 法令에 의한 資格의 取得者와 當該 法令上 같은 待遇를 받는다.

第11條 (技術資格取得者의 誠實義務) 技術資格取得者는 誠實히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하며 그 品位를 損傷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 (技術資格의 取消等) ① 主務部長官은 不正한 方法으로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에 對하여는 그 技術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 主務部長官은 技術資格取得者가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거나 第9條第4項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그 技術資格을 取消하거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그 技術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第13條 (優待의 制限) 技術資格取得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優待를 받지 못한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心身障得로 因하여 業務를 遂行할 수 없는 者.

第14條 (技術資格의 基準等) ① 다른 法令에 의한 資格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에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資格의 等級·基準 및 名稱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에 의한다.

② 다른 法令에 의한 資格을 取得한 者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에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로 본다.

③ 第7條 第3項·第8條 乃至 第11條 및 13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15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1. 技術資格檢定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檢定을 除外한다)을 받고자 하는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하는 者

3.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資格手帖의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第16條 (權限의 委任等) 主務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所屬機關의 長,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17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